

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아래 참조

5. 정보제공 목적 :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·확인조사 지원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<제1호 및 제2호의 각주 내용>

- 1) 아동수당 입금계좌가 아동발달지원계좌(CDA)인 경우 “발달지원”을,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“압류방지”를 비교란에 적습니다.
- 2)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 및 자격확인 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)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에 적힌 아동수당 입금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4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(만일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).

금융정보등의 범위	금융기관등의 명칭
<p>1. 금융정보</p> <p>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: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</p> <p>2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잔액 또는 총납입액</p> <p>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 :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(時勢價額)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 : 액면가액</p> <p>5)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</p> <p>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</p> <p>2. 신용정보</p> <p>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</p> <p>2) 신용카드 미결제금액</p> <p>3. 보험정보</p> <p>1) 보험증권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</p> <p>2) 연금보험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</p>	<p>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</p> <p>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</p> <p>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</p> <p>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</p> <p>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</p> <p>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</p> <p>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</p> <p>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</p> <p>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</p> <p>9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</p> <p>10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</p> <p>11) 「마을저축은행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</p> <p>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</p> <p>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</p> <p>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</p> <p>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</p>

안내사항

처리기한	60일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)	관계 법률	아동수당법
첨부서류 (해당자)	<p>1. 보호자의 신분증 2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. 난민인정증명서</p> <p>4. 입금계좌 통장 사본 5. 가족관계 기본증명서(상세) 6. 대출금 등 부채 증빙서류</p> <p>7.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·재산 증명서류</p>		

유의사항

- 1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아동수당법」 제7조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·변경 등의 확인·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할 수 있으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.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아동수당을 받은 자 또는 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징역,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3.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·질문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,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4. 이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받은 경우 가구원, 소득·재산상태, 보호자 또는 국적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,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5.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6. 이 신청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는 「아동수당법」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, 향후 「아동수당법」 제7조에 따른 확인·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7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자(보호자와 그 가구원)의 금융정보 등은 「아동수당법」 제8조제6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 아동수당 입금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